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99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조문별 검토	7
가. 목적 및 정의 등 (안 제1조부터 제5조)	7
나.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제7조)	11
다.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안 제8조)	14
라.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안 제9조)	16
마.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정하의원 등 17인
2. 발 의 일: 2025. 8. 5.
3. 회 부 일: 2025.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 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스포츠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조정 등을 규정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된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분석·보완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고, 스포츠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각 체육단체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해당 스포츠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재난·재해복구체계에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 분야의 경우 그러한 기술발전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제정안은 스포츠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해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스포츠지능정보화 전문기관의 지정,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등 범국가적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제정안의 구조]

본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제4조(체육단체 등의 책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제9조(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제12조(스포츠정보자원의 운용실태 조사 등) 제13조(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제14조(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제16조(권한의 위탁)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안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가지는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위해 스포츠 분야가 기술의 변

화속도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 스포츠분야는 선수들의 신체 데이터, 경기기록 상세 통계, 국민들의 건강 데이터 등 수많은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이며, 그만큼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치가 많은 분야임.

- 반면, 공공기관 스포츠정보시스템은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025년 3월 기준 구축·운영되고 있는 체육단체 정보시스템은 총 268개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상황임¹⁾.

○ 다만, 이미 범국가적으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존재함에도 스포츠 분야의 개별 지능정보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 법안을 제정할 경우, 일반법에서는 규율하기 어려운 별도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체계와 맞춤형 정책을 규율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집중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유사한 사례로 국방정보화의 경우

1) 참고자료 1: 체육단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참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규율하여 국방분야 지능정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반면, 동 제정안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능정보화 관련 법률들이 분야별로 제정될 경우 국가 지능정보화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중복 정책 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을 두어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규정을 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스포츠분야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지능정보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한 바,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등 (안 제1조부터 제5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스포츠정보”란 스포츠와 관련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장·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3. “스포츠정보자원”이란 스포츠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유선·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기술·인력 등 스포츠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지능정보화”란 스포츠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스포츠정보시스템”이란 스포츠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에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고도화·효율화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스포츠지능정보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지능정보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편의성·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인력·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단체 등의 책임)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등”이라 한다)는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반 구축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지능정보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정안은 동 법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관련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정보통신, 정보격차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의한 많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안 제2조에서 정의내리고 있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의 규정²⁾]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2) 강조표시된 용어들은 제정안에서 쓰이는 용어임.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
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
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제정안에서만 쓰이지 않고 지능정보화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³⁾. 유사 입법례로 「지방세법」에서도 용어 정의를 함에 있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3) <수정 의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정보”란 스포츠와 관련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장·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스포츠정보자원”이란 스포츠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유선·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기술·인력 등 스포츠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포츠지능정보화”란 스포츠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정보시스템”이란 스포츠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에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다른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나.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제7조)

제 정 안
제6조(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계획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반의 구축 및 고도화 3. 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4. 스포츠지능정보화 및 스포츠정보의 연계·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5.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6.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7.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 8. 스포츠 학술연구·행정 등 분야의 디지털화 9. 스포츠 분야의 정보보호 및 정보격차 해소 10. 그 밖에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등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 성과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분석·보완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려는 체육단체등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의 분석·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체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를 세우기 위함이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지능정보화 추진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⁵⁾.

- 해당 실행계획의 기반이 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음.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규정사항]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스포츠지능정보화 계획 수립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조정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1항6)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

-
- 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이미 존재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규정만으로 동 규정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0조가 분야를 불문하고, 지능정보화 정책의 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제8조는 중복 입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 및 사업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스포츠행정 전산화 업무의 지원 3. 소속 직원의 지능정보화역량 강화 지원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등의 장은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협의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제4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의회의 구성·운

영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회에 통보 의무를 갖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바, 안 제9조제4항의 통보 의무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

제 정 안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능정보화기술의 도입·활용이나 스포츠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에 따른 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2. 제12조에 따른 스포츠정보자원의 운용실태 조사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4.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체육단체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등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라 통합한 스포츠정보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스포츠정보자원의 운용실태 조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등에 대한 스포츠정보자원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체육단체등의 장은 스포츠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재난·재해복구체계에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스포츠정보 재난·재해복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포츠정보 재난·재해복구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보급·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을 대상으로 스포츠지능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능정보화기술의 도입·활용이나 스포츠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및 재난·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장기간 전 국민이 정부 전자시스템의 마비로 불편을 겪은 사례를 고려했을 때,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재난,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전문기관은 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와 재난·재해복구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도 서버와 백업 서버가 같은 장소에 있어 원본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동시에 소실되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통합관리와 재난·재해복구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체육단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25.3월 268개)

※ (조사대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기원 및 무예단체,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프로단체(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

□ 대한체육회 (84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체전 정보제공	'04년(구축) '24년(재구축)	전국·소년·동계체전 대회정보, 경기기록 및 결과, 명단 등 제공	meet.sports.or.kr
	2	역대 전국체전	'12년(구축) '24년(재구축)	역대 대회별 체전(전국·소년·동계) 경기결과 및 출전명단	
	3	체전 참가자등록	'03년(구축) '24년(재구축)	전국·소년·동계체전 참가선수·지도자·팀 등록 관리	
	4	스포츠지원포털	'13년(구축) '21년(재구축)	체육인 웹서비스 정보제공포털 (등록통계현황 등)	g1.sports.or.kr
	5	종목별 경기결과	'06년(구축) '24년(재구축)	각 종목 대회별 경기결과, 기록, 일정, 출전명단 등 제공	
	6	선수·지도자·심판 등록신청	'03년(구축) '21년(재구축)	선수·지도자 등록신청 및 신청서 작성·제출	
	7	인터넷증명서발급 (증명서원본검증)	'13년(구축) '22년(고도화)	경기실적·등록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출력	
	8	대회경기영상	'18년(재구축)	대회별 경기 동영상 제공, 경기영상별 실적 연계	
	9	훈·포상관리	'19년(구축)	체육발전유공자 공적 및 포상 관리, 공적조서·증명서 등 발급	
내부	10	체육정보시스템 통합로그인	'16년(재구축) '21년(재구축)	체육정보시스템 관련 웹서비스 일괄 대시보드, 로그인 및 계정관리	pis.sports.or.kr
	11	체육단체 인트라넷	'23년(구축)	체육정보시스템 사용자간 파일 송수신 및 업무 연락	
	12	헬프데스크	'14년(구축)	체육정보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민원 처리	
	13	체전운영	'02년(구축) '24년(재구축)	전국·소년·동계체전 경기기록 및 결과 입력 관리	
	14	선수·지도자·심판관리	'02년(구축)	선수·지도자 승인 및 등록정보 관리	
	15	증명서·경기실적관리	'13년(구축)	증명서 신청 승인 및 경기실적정보 관리	
	16	국가대표·후보관리	'16년(재구축)	국가대표, 상비군, 청소년 등 훈련·보험·숙박 정보관리	
	17	급식관리	'10년(구축)	국가대표 선수촌 급식 및 식자재 관리	
	18	종목단체 현황관리	'16년(재구축)	회원종목단체 경영공시정보 관리	
	19	임원정보관리	'16년(재구축)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등기임원 승인신청 및 정보 관리	
	20	징계정보관리	'20년(구축)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 등 징계정보 관리 및 윤리센터 징계시스템 연동	
	21~84	종목별 경기운영(64종목)	'06년(구축) '24년(재구축)	종목별 경기운영, 대회참가등록, 실적관리 및 체육정보 연동	-

□ 대한장애인체육회 (60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기관 홈페이지	‘04년(구축)	기관소개, 장애인체육정보 제공, 대회 정보 제공 등	www.koreanpc.kr
	2	체전 홈페이지	‘07년(구축)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회정보 전반 제공	national.koreanpc.kr
	3	통합정보센터	‘07년(구축)	선수등록, 동호인등록, 심판등록 등의 등록관련 서비스 제공	total.koreanpc.kr
	4	생활체육정보센터	‘07년(구축)	찾아가는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상담, 용품대여, 동호인클럽 등록	sports.koreanpc.kr
	5	장애인체력인증센터	‘17년(구축)	장애인 체력 측정 지원 및 결과 기반 운동처방 서비스 제시	nfa.koreanpc.kr
	6	KPC온라인교육관	‘20년(구축)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대상 강의 및 학습제공 플랫폼	www.kpconline.kr/
	7	드림패럴림픽	‘19년(구축)	패럴림픽 및 장애인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	www.parasports.kr
	8	장애인체육인 대국민포털	‘25년~‘26년 (구축예정)	기관소개, 생활체육정보센터, 체력인증센터, 온라인교육관, 선수등록 등	www.koreanpc.kr
내부	9	이천선수촌 관리시스템	‘19년(구축)	선수입퇴촌 관리, 강의실 및 훈련장 대관신청 등	없음
	10	전자결재시스템	‘06년(구축) ‘18년(재구축)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없음
	11	예산회계시스템	‘06년(구축) ‘13년(재구축)	기관 지출 및 수입 등 회계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없음
	12	전자메일시스템	‘06년(구축) ‘20년(재구축)	기관 관계자 메일 시스템	mail.koreanpc.kr
	13	인사/복무시스템	‘07년(구축) ‘12년(재구축)	내부 인사 관리 전자 시스템	없음
	14	메신저시스템	‘07년(구축) ‘20년(재구축)	직원 사내 커뮤니케이션(메신저) 시스템	없음
	15	스팸메일시스템	‘06년(구축) ‘19년(재구축)	스팸메일 관리 시스템	없음
	16	문서암호화시스템	‘17년(구축)	문서 암호화 등 보안 시스템	없음
	17	경기운영시스템	‘07년(구축)	대회 경기 운영 전산 시스템	없음
	18	서훈관리시스템	‘08년(구축)	장애인체육 서훈관리 시스템	honor.koreanpc.kr
	19	업무 포털시스템	‘25년~‘26년 (구축예정)	선수육성관리, 서훈관리, 국가대표관리, 체육단체운영관리, ERP시스템 데이터통합, 스마트통계, 선수촌관리, 스포츠과학분석, 디지털아카이브 등	www.koreanpc.kr/mgr
	20~60	가맹단체 별 경기운영(41종목)	‘25년~‘26년 (구축예정)	41개 종목의 개별적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동	없음

□ 국민체육진흥공단 (27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내용	도메인
대외	1	KSPO 스포츠가치센터 정보시스템	'22년	진주 스포츠가치센터 주요 안내 및 시설강좌 예약	sportsvalue.kspo.or.kr
	2	Kboat 경정 홈페이지	'25년	경정 경주정보 제공 및 안내, 이벤트 참여	www.kboat.or.kr
	3	Kcycle 경륜 홈페이지	'25년	경륜 경주정보 제공 및 안내, 이벤트 참여	www.kcycle.or.kr
	4	K스포에듀 홈페이지	'17년	체육인재양성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신청 및 접수, 관리 수수료 발급 등	edu.kspo.or.kr
	5	공단홈페이지	'18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직 및 사업내용 등 공단 정보 제공	www.kspo.or.kr
	6	국립체육박물관 홈페이지	'16년	국립체육박물관 안내 및 유물정보 제공	kspo.or.kr/sportsmuseum/olympic.jsp
	7	국민체력100 시스템	'23년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체력증진교실 신청,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신청/전환 등	nfa.kspo.or.kr
	8	한국스포츠과학원 홈페이지	'14년	기관소개 및 홍보콘텐츠 제공, 연구과제 및 정책정보, 정기간행물 제공, 견학관리 등	www.sports.re.kr
	9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18년	한국스포츠과학원 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www.sports.re.kr/lib
	10	불법스포츠투토타인포센터	'18년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및 행위자, 승부조작등의 불법행위 신고 등	cleansports.kspo.or.kr
	1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20년	스포츠레저산업 종합전시회 안내 및 홍보(전시회소개, 참가안내, 관람안내, 부대행사 등)	www.spoex.com
	12	서울올림픽기념관 홈페이지	'03년	서울올림픽기념관의 소개 및 관련 자료 제공(올림픽이야기, 전시교육 등)	88olympic.kspo.or.kr
	13	서울올림픽자료관리	'12년	88서울올림픽 관련 자료 및 올림픽 정보 제공	library.kspo.or.kr
	14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09년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활동 지원(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 가입, 이용권 신청, 결제)	svoucher.kspo.or.kr
	15	스포츠산업정보 통합시스템	'18년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spobiz.kspo.or.kr
	1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19년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활동 지원(강좌이용권신청, 수강료 결제, 강좌관리, 등)	dvoucher.kspo.or.kr
	17	지역스포츠과학센터 홈페이지	'16년	지역선수 스포츠 과학 지원(체력측정 신청 및 분석결과 리포트 및 훈련가이드 제공 등)	css.kspo.or.kr
	18	체육시설알리미	'17년	체육시설 현황 및 알림/뉴스 등 체육시설 관련 정보 제공	www.sportinfo.or.kr
	19	체육지도자자격관리 시스템	'15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필기/실기 및 구술), 연수운영, 자격증발급 등	sqms.kspo.or.kr
	20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25년	체육인 대상의 복지서비스(연금, 장학금 지급 등) 제공	spowell.kspo.or.kr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내용	도메인
내부	21	KSPO 연구관리	'14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 과제정보, 연구평가정보, 논문(UASS/체육과학연구) 정보관리	pms.sports.re.kr
	22	경기력진단평가시스템	'14년	국가대표선수 스포츠과학 지원(체력측정, 분석, 리포트 생성)	nkeft.sports.re.kr
	23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24년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체력, 컨디션, 심리, 기술, 영상, 데이터 전공 분야) 및 데이터 분석관리	모바일 앱
	24	스포츠과학정보넷	'21년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 대상 지원관리 및 현장지원결과, 수준별 스포츠과학교재 등의 정보제공	모바일 앱
	25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관리시스템	'21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생 선정 및 관리, 통계 관리 등	lstvmng.kspo.or.kr
	26	체육시설안전관리 시스템(SFMS)	'16년	체육시설 현황관리, 안전점검 현황관리, 체육시설 사후관리	sfms.kspo.or.kr
	27	체육요원 복무관리시스템	'21년	체육요원 복무관리(편입, 신상이동, 국외여행, 겸직), 공익복무 관리(계획, 실적 관리) 등	rmssmng.kspo.or.kr

□ 스포츠윤리센터 (4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스포츠윤리 런(LMS)	'21~'25년 (구축 및 고도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제공 및 수강이력,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관리	edu.k-sec.or.kr
	2	통합정보 시스템	'26(예정)	체육인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 이력 등 관리	-
대외,	3	징계정보 시스템	'21년, '23년	(대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발급, (내부) 징계정보수집 및 시스템 운영	dis.k-sec.or.kr
내부	4	통합신고관리 시스템	'21년(구축) '24년(고도화)	(대외)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관련 사건 신고·상담·피해자지원 신청 (내부) 사건 신고·상담·피해자지원 및 조사·후속조치 등 업무처리	speth.or.kr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3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19년	금지약물검색서비스 등 도핑방지활동 공지사항 게시	www.kada.or.kr/
내부	2	교육eKADA	'24년	온라인 도핑방지교육 플랫폼	edu.kada.or.kr/
	3	통합도핑관리시스템	'15년	도핑검사 통계 관리	kadams. kada.or.kr/

□ 국기원 · 무예단체 (5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무예 데이터베이스	'22년	세계무예 정보 수록, 한국 무예 단체 현황 정보 수집	maon.kr
	2	태권도 온라인플랫폼 - 사용자	'22년	심사신청, 자격증발급신청, 도장조회, 구인구직, 설문 등	tkdcon.net
	3	사이버연수원 - 사용자	'17년	자격연수 지원 및 수강	wta.kukkiwon.or.kr
내부	4	태권도온라 인플랫폼 - 관리자	'22년	자격연수 지원 및 수강	tkdcon.net
	5	사이버연수원 - 관리자	'17년	개인정보관리, 자격조회 등 서비스 관리	wta.kukkiwon.or.kr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5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한국프로 스포츠협회 홈페이지	'16년	프로스포츠협회 소개, 공지, 주요사업 등	www.prosports.or.kr
	2	프로스포츠 경기인 심리 상담		프로스포츠 경기인 심리 상담 신청	
	3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접수	
내부	4	한국프로 스포츠협회 홈페이지 관리자	'25년	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 관리, 심리 상담 접수 등	www.prosports.or.kr/adm/login
	5	주최단체 지원금 성과평가 업무시스템		주최단체지원금 성과평가 자료 제출, 실적 확인, 평가, 결과 확인 등	구축 예정

□ 한국프로축구연맹 (6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데이터포털 시스템	'18년	경기 기록 상세 통계 및 감독관 및 TSG 등 경기보고서 작성	portal.kleague.com
	2	정보지원 시스템	'23년 (재구축)	K리그 미디어 지원을 위한 시스템 취재신청, 기록정보 등	press.kleague.com
	3	K리그 공식 홈페이지/앱	'21년 (재구축)	K리그 경기결과 기록, 일정, 출전명단, 영상 등 제공	kleague.com
	4	재정건전화 시스템	'25년	구단 경영 효율화와 리그와 구단의 재정 건전성 관리	kfm.kleague.com
	5	미디어센터	'20년	K리그 아카이브 영상관리	mediacenter.kleague.com
내부	6	K리그기록 관리시스템	'16년 (재구축)	K리그 경기 일정, 기록 및 결과 입력 관리	-

□ 한국야구위원회 (12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일정 · 결과	'12년 (재구축)	경기 일정, 결과, 경기 프리뷰, 문자중계, 야구장 날씨 등 정보 제공	koreabaseball.com
	2	기록 · 순위		개인 기록, 팀 기록, 상대전적, 관중 현황 등 정보 제공	
	3	선수		개별 선수 조회, 선수 등록 현황, 선수 이동 현황, 수상 현황 등 정보 제공	
	4	미디어 · 뉴스		KBO 리그 하이라이트, 보도자료, KBO 리그 관련 뉴스 제공	
	5	KBO 리그		규정 규칙 변경사항 및 운영체제, 구단 소개, 티켓 예매처 안내	
	6	게시판		입찰공고, 이벤트 안내, KBO 관련 1:1 문의 게시판 운영, 연감, 레코드북, 가이드북 등 제공	
	7	클린베이스볼 온라인 교육 센터	'17년	선수단, 코칭스태프 및 리그 관계자 대상 부정행위 방지 온라인 교육	cleankbo.com
	8	클린베이스볼 신고 센터		KBO 리그 부정행위 관련 온라인 신고 접수	
	9	선수단 통신문		클린베이스볼 선수단 통신문 업로드	
	10	비디오판독	'20년	비디오판독 정보 및 판독영상 업로드	kborc.com
내부	11	증명서 발급	'17년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수상 및 대표팀 경력 증명서 발급	certificate.koreabaseball.com
	12	운영통합 관리 시스템	'17년	KBO 리그 엔트리 등록 및 승인 경기 모니터링 보고서 등록,,	ops.koreabaseball.com

□ 한국배구연맹 (3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한국배구연맹 (통합 홈페이지)	'05년(구축)	연맹 소개, 주요 기록, 경기일정 안내 이벤트 안내 및 자유게시판 운영	kovo.co.kr
			'23년 (구축)	통합 홈페이지 운영으로 구단 소개, 티켓 통합 판매	
			'23년 (구축) '24년 (재구축)	MD 판매 스토어	
			'25년 (구축)	유소년 대회 접수 및 일정 안내 등	
	2	한국배구연맹 DB뱅크	'05년(구축)	선수 등록 현황 및 기록 관리시스템 (구단 방송 기자단 등 대상)	dbbank.kovo.co.kr
	3	한국배구연맹 아카이브	'16년(구축)	사진 및 영상 관리 시스템 (관계자 대상)	archive.kovo.co.kr

□ 한국농구연맹 (17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경기 정보	'20년	시즌 일정, 결과 등 정보 제공	www.kbl.or.kr
	2	기록 정보		선수 / 팀 각종 기록 정보 제공	
	3	선수 정보		리그 소속 선수 정보, 개별 기록 제공	
	4	팀 정보		10개 팀 각종 개별 정보 (경기 일정, 티켓 예매)	
	5	소식 정보		리그 주요 공지(연맹, 구단) , 입찰 공고, 채용 공고 등 안내	
	6	미디어 정보		경기 / 주요 행사 영상(쇼츠, 하이라이트), 사진 제공	
	7	스토어 정보		연맹 / 10개 구단 각종 MD 판매 (유니폼, 응원도구, 기념품 등)	
	8	티켓 정보		올스타전, 시즌 티켓 가격 및 예매 서비스 제공	
	9	KBL 유스		유소년 사업, 각 구단 유스 클럽 소개, 유소년 대회 소개, 각종 측정 자료 등	
	10	기타		KBL 판타지 게임(경기 DB 활용), 팬 설문 조사, 온라인 이벤트 투표 등	
내부	11	통합 사진 시스템	'02년	연맹 및 10개 구단 주요 행사, 경기 포토 서비스 제공(관계자 대상)	photo.kbl.or.kr
	12	통합 영상 아카이브 시스템	'21년	시즌별 경기, 행사(올스타전, 시상식, 드래프트 등) 영상 DB 축적/관리	kblarchive.e-soom.co.kr
	13	통합 기록 통계 시스템	'03년 '23년(재구축)	시즌별 정규, 플레이오프, 올스타전, D리그 감독/선수/팀 DB 축적 및 관리	stats.kbl.or.kr
	14	예산관리시스 템	'16년	연맹 사업비 / 주최단체지원금 집행 관리	gw.kbl.or.kr
	15	경기일정 작성 시스템	'10년 '23년(재구축)	매시즌 정규경기 일정 작성/관리	-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16	징계정보시스템	'97년(구축)	역대 재정위원회 결과 DB 관리 (각종 제재 케이스 등)	-
	17	선수 등록 시스템	'97년(구축)	역대 시즌별 감독, 코치, 선수 DB 관리(계약기간, 연봉, 개인정보 등)	-

□ 한국여자농구연맹 (10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경기 정보 제공	'97년 '09년(재구축)	경기 일정, 팀 순위, 선수 순위, 경기 기록 및 결과 등 제공	www.wkbl.or.kr
	2	역대 기록	'20년	역대 리그, 수상자, 드래프트, FA 등 역대 기록 관련 정보 제공	
	3	대회 정보 제공	'21년	컵대회, 3x3대회, 올스타전 등 대회 관련 정보 제공	
	4	통합 티켓앱	'21년	대회별 티켓 예매, 실시간 경기 영상 순위, 기록 등 경기 정보 제공	-
	5	드래프트 신청자 접수	'17년	드래프트 신청(지원서류 접수), 공지사항 안내 등	http://draft.wkbl.or.kr/
	6	WKBL 통계정보시스템	'01년 '04년(재구축) '05년	경기기록, 팀순위, 선수/감독/구단별 기록, 역대 최다/최소 기록 조회 실시간 경기기록 정보	-
내부	7	포토DB	'16년	대회별 경기 사진 제공	photo. wkbl.or.kr
	8	드래프트 신청자 명단 관리	'17년	드래프트 신청자 명단(신청자별 서류) 관리, 회원 관리, 접수기간설정 등	http://draft.wkbl.or.kr/
	9	WKBL 아카이브 시스템	'19년	여자농구 경기영상 로깅서비스 DB 구축	http://archive.wkbl.or.kr
	10	WKBL 통계정보시스템	'15년	선수등록, 계약정보, FA선수 관리, 드래프트 정보 입력	-
			'13년	선수/감독/코치 경력증명서 발급	
			'15년	심판 출장 기록	
			'06년	관중현황 기록	
			'17년	시즌/라운드 보고서 작성	
			'19년	유소년 클럽/학교 선수/기록 관리	
			'20년	유소년 지도자 파견 관리	

□ 한국프로골프협회 (19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대회 정보 제공	'22년 (재구축)	역대 대회별 공지사항, 경기 기록 및 결과, 명단 등 제공	kpga.co.kr
	2	회원 정보 제공		KPGA 가입 회원(투어프로, 프로) 현황	
	3	대회 경기 영상		대회별 경기 동영상 제공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4	인터넷증명서발급		경기실적, 등록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출력	
	5	회원전용게시판		KPGA 회원 및 홈페이지 가입만 확인 가능한 게시판(협회 건의글, 각종 회원들간의 소통 창구)	
	6	1대1 문의 게시판		KPGA 대상 문의 시 사용	
	7	이사회 결과보고 게시판		이사회 결과보고 배포(회원에게만 공개)	
	8	뉴스 게시판		대회, 협회 관련 뉴스 배포	
	9	회비 납부		연회비 온라인 납부 시스템	
	10	대회 및 교육 신청		대회 및 교육 신청 시스템(참가비 납부 연계)	
	11	회원복지 신청		회원복지 신청(각종 경조사 등)	
내부	12	회원정보관리	'22년 (재구축)	KPGA 회원 및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관리	erp. kpga.co.kr
	13	대회운영관리		대회 일정, 대회 경기결과 등록 관리	
	14	교육 운영 관리		대회 일정, 대회 경기결과 등록 관리	
	15	징계관리		회원 징계 정보 관리	
	16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각종 공지사항, 뉴스 등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17	이사회 결과보고 관리		이사회 결과보고 관리 (홈페이지 공지, 회원에게만 공지)	
	18	회비 관리		회비 관리(회비 청구 및 납부 현황 관리)	
	19	대회 및 교육 신청 관리		대회 및 교육 신청 관리(대회 참가비 청구, 납부 현황 조회)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13개)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대외	1	KLPGA 홈페이지	'23년	투어 서비스	klpga.co.kr
	2	KLPGA 투어 앱			
	3	리더보드 샷 트래커	'20년	투어 리더보드 내 샷 트래커 시스템 서비스	klpga.co.kr
	4	투어 스마트 위치 앱	'23년	투어 서비스 앱 (iOS/안드로이드)	-
	5	데이터센터	'19년	투어 기록 / 미디어 서비스용	data.klpga.co.kr

구분	연번	시스템명	구축 시기	주요 내용	도메인
	6	K-랭킹		투어 랭킹 시스템	k-rankings.klpga.co.kr
	7	아카데미	'21년	회원 교육용 사이트	edu.klpga.co.kr
	8	온라인 박물관	'23년	역대 유물, 사진 등 온라인 박물관	museum.klpga.co.kr
	9	온라인 증명서	'18년	회원 온라인 증명서 발급	unc.doculink.co.kr
내부	10	KLPGA 어드민	'18년	통합 관리 시스템 (투어, 미디어, 행정 등)	admin.klpga.co.kr
	11	그룹웨어(웹, 앱)	'22년	내부 그룹웨어	group.klpga.co.kr
	12	경기위원 시스템(웹)	'20년	투어 운영용 경기위원 시스템	rules.klpga.co.kr
	13	경기위원 시스템 앱	'22년		